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4가단14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및 주식회사 C는 2023년 4월경 ‘차용금 1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이자 없이 차용하되 2023년 4월경까지 사업자대출(마이너스)로 상환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대표자로 있던 (주)C에서 (주)D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130,000,000원을 투자한 토지를 인수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주)D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또는 토지에 대한 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전보해주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차용증이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는 당초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금전반환채무를 대신하여 원고의 투자금 130,000,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됨으로써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으로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